

국제기록회의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인권 작업단
(Human Rights Working Group)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Archivists and Records Managers in
Support of Human Rights

국제기록회의 작업 문서

(A working document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2016년 9월

서 문

보존기록은 인권이라는 목적에 유용한 존재이다. 권리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보존기록이 꼭 필요하다: 즉, 개인기록, 사회보장(보험) 기록, 직장 건강보험과 작업 안전에 관한 기록, 군복무기록들이 그런 보존기록이다. 어떤 보존기록은 국민으로서의 권리, 선거권 등록, 토지 등기, 시민권 증명을 도와준다. 그러나 또 어떤 보존기록은 인권 침해의 증거를 제공한다. 독재시대 군, 경찰, 정보부의 기록이나, 더 나아가 감옥, 병원, 시체안치소나 묘지의 기록이 그런 기록이다.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구체적인 법률 쟁점과,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문제와 개인적인 전문윤리 문제를 다룬다. 이런 일들이 복잡하기는 해도 많은 나라에서 최선의 전문 업무과정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그런 보존기록을 관리하려고 할 때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런 보존기록을 관리하거나 평가하려고 할 때 접근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보이는 보존기록의 폐기를 승인하라고 압력받을 수 있다. 그런 보존기록을 소장기록 목록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받을 수도 있다. 이런 보존기록에 꼭 필요한 보존 조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인이나 자격 있는 연구자에게 이런 보존기록을 제공할 것인가 결정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들이 기록전문직 원칙을 따르려고 할 때 보복당할까 두려워 할 수도 있다.

모든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인권을 위한 중요 보존기록을 최선을 다해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동료 기록전문직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기록전문직 전체가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 국제기록회의(ICA)는 1996년에 기록전문직 윤리강령(Code of Ethics)을 채택하여 아키비스트들이 전문적 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윤리적 범위 기준을 제공했다. 2011년 유네스코가 채택한 세계기록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존기록의 중요성과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표명했다. 이 중요한 선언문들은 기록전문직이 가진 책무의 일반적인 기본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권과 보존기록 간의 중요한 연결관계는 이 기록전문직 윤리강령과 세계기록선언에서 단지 일반적으로만 표명되었을 뿐인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에 더 명백하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요하게 만들었다.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은 전문과 원칙, 두 부(parts)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이 원칙의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각각의 원칙에는 설명문이 달려 있는데, 이 설명문은 그 원칙의 일부가 아니다. 이 원칙은 5절(Sections)로 묶어져 있다. 첫째 절과 둘째 절은 기본적인 보존기록의 기능을 다루고, 셋째 절은 악행을 기록화한 보존기록과 원래의 장소에서 이탈된 보존기록을 다루는 특수한 상황을 다룬다. 다룬다. 넷째 절과 다섯째 절은 전문직으로서의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전적으로 다룬다.

이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은 이 <원칙>에서 사용한 용어와, 이 <원칙>의 기초가 되는 국제조약, 협정, 합의, 의견, 관련 사항들을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다.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전 문

‘세계인권선언’ 및 산하 두 개의 선택의정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기타 국제조약 및 법률 문서에 의거하여 모든 인간이 누릴 권리가 있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실행이 보존기록의 보존과 보존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 강화되기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에서 국가는 인권과 인권법의 침해에 관한 보존기록이 보존되고 접근될 수 있게 보장할 책무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보존기록 안에 무슨 정보가 있는지 아는 것을 포함한 ‘알 권리’가 개인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권리이며, 국가는 기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누구나 공정하게 방어할 수 있게 보장하는 한편,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보존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대중들이 정부의 협치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는 근본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를 찾고 제출받을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기에;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 혹은 시민적, 정치적 인권의 적절한 보호와 기본적 자유는 독립적인 보존기록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보존기록 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기록전문직들로 구성된 전문가협회가 전문적 기준과 전문직 윤리를 수호하는 일, 보존기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존기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정의와 공익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기타 기관과 협력하는 일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에;

기관과 개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각기 가진 책임에 따라서 위와 같은 목적에 기여할 때에만 보존기록의 보존과 그 보존기록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될 수 있기에;

*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규약)*;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규약)*. 196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이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되었다. 대한민국은 1990년 이 두 조약에 가입했고 국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헌법에 따라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UNESCO,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8 February 2005.

아래 제시된 <인권 옹호를 위한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작성되었다:

- 보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이 인권을 옹호하는 아키비스트들의 올바른 역할을 보장하는 임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 인권 시행과 보호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각 개인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 아키비스트들과 기록관리자들로 구성된 기록전문가협회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의 공직자들이 이 <원칙>에서 다루는 쟁점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전문직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가 인권 보호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공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원칙

I. 보존기록의* 선별과 보유

1.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인권을 기록한 보존기록을 보호하는 기록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 인권 보존기록의 관리가 보존기록으로서의 무결성과 증거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떤 포맷이던지 간에, 보존기록은 사람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들의 권리와 자격을 지원하거나 혹은 그들이 효과적으로 이익을 제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보존기록이 생산 시점부터 접근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장되게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국제표준기구(ISO)는 이러한 요건을 제시한 다수의 표준을 발행했다. 예를 들면, ISO 15489, “문헌정보-기록관리” 국제표준은 보존기록의 생산, 획득, 그리고 관리를 위한 핵심 개념과 원칙을 수립했다. ISO 15489 국제표준이 제시한 원칙에 따라 제정된 ISO 30300 국제기록경영시스템표준 시리즈는 효과적인 ‘기록경영시스템’(MSR)의 이행과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보존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ISO 16175 “전자업무 환경에서의 기록의 원칙과 기능요건” 국제표준은 업무 환경에서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원칙과 기능 요건을 제공한다. 인권 보존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은, 해당 보존기록이 진본이며,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으며, 인가받지 않은 접근과 변경 및 삭제로부터 안전하고, 필요시 찾을 수 있고,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았으며, 다른 관련 보존기록들과도 연결되게 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록관리자 및행정가협회’에서 제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록관리 원칙’은**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의 보존기록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2.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인권이나 인도주의법의 침해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존기록의 폐기를 방지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에 있는 제14원칙, “보존기록 보존을 위한 방안”은 “알 권리는 보존기록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식으로든지, 특히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도주의적 법률을 위반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보존기록을 제거, 폐기, 은닉 또는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조치와 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키비스트나 기록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보존기록 안에 인권 침해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보존기록의 출처에 기반하여, 그 보존기록의 내용에 그와 같

* 이 문건에서는 ‘records’라는 용어 대신 ‘archive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archives’는 한국기록학회에서 출간한 <기록학용어사전>에 따라 ‘보존기록’으로 번역했다. 이 <원칙>에서는 ‘records’라는 용어를 인용문에 나올 때만 사용했고 ‘기록’으로 번역했다. 이 <원칙>에서는 ‘archives’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록(‘records’)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부록의 ‘용어 정의’ 참조) 이 절에서 언급된 각종 국제표준 및 일반 원칙에서는 ‘기록(record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존기록(archiv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ARMA International, “Generally Accepted Recordkeeping Principles.”

은 인권 침해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므로 그 보존기록이 폐기되어서는 안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그들이 속한 기록보존기관의 범위와 사명 안에서 보존기록을 선별, 수집, 보유하여야 하나,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차별 없이 그러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같은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키비스트는 모든 집단들을 반영하고 이 모든 집단에 관련된 보존기록을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기록보존기관 중에 어떤 기록보존기관은 종교 단체 기록, 원주민 공동체 기록, 혹은 사회 운동을 기록한 보존기록에 특별한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록보존기관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따라 수집업무에서 차별을 두고 있으나, 그들 기관의 사명 안에 있는 특별한 초점과는 상관없이 보존기록을 포용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4.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보존기록을 평가 결정할 때마다, 평가 대상 보존기록이 인권에 관한 보상 청구를 지원하거나 혹은 식별하게 하는데, 인권 침해자의 신분 확인을 지원하는데, 인권 침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직위를 가졌던 사람들의 신원을 밝힐 수 있게 하는데, 인권 침해로 이끈 사건 과정들을 밝혀낼 수 있는데, 실종자의 운명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개인들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해 보상받게 해 줄 수 있는데, 그 보존기록이 가진 유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안에 포함된 개념에 따라,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기 정의란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과거 체제에서 일어났던 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권력을 가진 직위에 있지 않게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사회 안에 있는 집단들에서,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권리 회복과 배상을 획득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에 외상성 증상을 야기한 국가 행위가 발생한 후에,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민간단체의 인권 침해 행동이 발생한 후에, 유사한 [진상 규명과 배상 요청] 요구가 나오고 있다. 보존기록은 이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주민등록대장부터 토지대장, 성직자 인사기록, 기업의 상품매매 계약 실사를 보여주는 보존기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보존기록이 인권을 지원한다. 이는 2011년에 채택된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요구하는 바와 같다.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보존기록이 지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5. 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법의 위배에 관련된 보존기록이 반드시 보존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 여기서 배상(reparations)은 불법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한다. 정부와 민간 기관은 이러한 보존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과 기타 자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3원칙, “기억 보존 의무”는 “민중에 대한 압제의 역사에 대한 민중의 지식은 민중의 유산의 일부이며, 그러한 유산으로서, 국가가 인권 침해와 관련된 보존기록과 기타 증거들을 보존하고, 이러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지식을 촉진해야 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채택한 적절한 조치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러한 조치들은 이 집합적 기억이 소멸되지 않게 보존하며, 특히, [사실을 왜곡하는] 수정주의적 주장과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정론적 주장이 발흥하는 것을 막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이 ‘원칙’은 국가가 단지 국가의 보존기록만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보존기록”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가는 비정부 보존기록의 보존과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비정부 보존기록의 보존과 접근에 관한 강력한 공개 성명을 하거나, 그런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정한 보존기록을 보존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거나, 비정부 보존기록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대중을 위해 관련 보존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민간 영역의 보존기록을 기증 받거나, 위협에 처한 보존기록을 위해 “안전한 피난처”로 믿을 수 있는 보존서고를 제공하는 일을 할 수 있다.

6.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전환기 정의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 기관의 보존 기록이, 그 기관의 존속 기간과 종료 이후에도, 보호되고 보존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런 기관에서 생산된 어떠한 보존기록도 그것을 폐기하기 전에 대중에게 공지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처벌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5원칙,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보장”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대규모 또는 체계적인 기반 하에 저질러진 극악한 범죄를 경험한 사회는 그런 인권 침해와 관련된 진실을 확립하기 위해 특별히 진실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진실을 확인하고 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게 하는 일이 유익할 수 있다. 국가가 그러한 진실위원회를 설립하든 안하든 간에, 국가는 인권 침해에 관련된 보존기록을 보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설립했든 혹은 민간이 설립했든 간에,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의 보존기록은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록이며, 이 범주 안에 속해 있다. 국가에서 보존기록의 일부를 폐기하기 전에 그것을 국민에게 공고하고 보존기록의 폐기에 반대할 기회를 주는 것이 스페인과 미국 같은 나라에서의 확립된 관행인데, 보존기록이 이러한 민감한 전환기 정의 기관에서 생산된 것일 때는 특히 중요하다.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pdated Set of Principles to Combat Impunity*.

II. 보존기록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제공

7. 아키비스트는,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지식을 다해서, 어떤 보존기록이 인권에 대한 주장을 실행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정보, 특히 대규모 인권 침해에 대한 정보, 혹은 실종자의 운명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혹은 개인들이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주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인지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소장 보존기록의 기술(記述)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2원칙, “양여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모든 사람은 극악한 범죄의 범행에 관한 과거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대규모 또는 체계적인 인권 침해로 인해 그러한 범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사유에 대한 진실을 알 양여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진실에 대한 권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진실을 알 권리는 또한 2010년에 채택된 ‘모든 사람들을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도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보존기록 접근에 관한 유럽 정책에 관한 [EU] 회원국 각료이사회 권고안 No. R(2000) 13호는 “한 나라는 그 거주민 각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를 객관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만 온전히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좋은 기록 기술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구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설명한다.

8.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문서화한 보존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두면서, 이용자에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보존기록의 정리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기록보존기관은 모든 소장 보존기록에 대해 적시에 기술(記述)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아키비스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소장 보존기록의 기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인권에 대한 관심은 핵심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9. 각국 정부는 정부의 인권 침해 및 인도주의법의 위반에 관한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이 제공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9.2조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정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확립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매체의 자유에 대한 유럽대표의 보안과 협력기구’, ‘아메리카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04년 12월 공동 성명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근본적인 인권이다.”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국가 안보와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 원칙’(일명 츠와니 원칙)^{*}은* 정당한 국가 안보 고려사항을 보호하면서 가능한 한 정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다. 원칙 10.A.1.은 “국제법을 위배한 범죄와 개인의 자유와 안전권에 대한 체계적이거나 광범위한 침해, 인권의 중대한 침해 또는 국제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우선적인 이익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인권 침해 및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에 관한] 정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 안보를 핑계로 비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유럽 의회협의회는 ‘결의안 1954(2013): 국가안보와 정보접근’에서 츠와니 원칙을 승인했다.

10.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정부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옹호하고 지지해야 하며, 비정부기관도 그들의 보존기록에 그와 유사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이는 국제기록회의가 채택한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에 부합한다.**

국제기록회의(ICA)의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에서 제시된 10개 원칙은 이 원칙의 기초이다. 또한, 국제기록회의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Code of Ethics) 제6조는 “아키비스트는 보존기록물이 최대한 공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이용자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201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 세계기록선언은 “유관 법령과 개인, [기록] 생산자, [기록] 소유자와 [기록] 이용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보존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16원칙, “보존기록 관리부서와 법원과 비사법적 조사위원회 간의 협력”에는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에 관한 특별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법원과 비사법적 조사위원회 및 이 기구에 보고하는 조사관은 관련 보존기록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특히 피해자 및 기타 증인에게 증언의 전제조건으로 제공된 비밀 보장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접근에 대한 제한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정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접근 제한이 필요불가결함을 입증하거나, 접근 제한 결정이 독립적인 사법 심사 결과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11.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정보가 관련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 기본적 자유,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에 관한 규정 이외에, 국제기록회의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제7조는 “아키비스트는 국가안보와 동등하게 개인과 기업의 사적 정보를 한치의 훼손함도 없이 보호해야 한다. 이점은 특히 전자기록물의 경우처럼 내용 갱신이나 삭제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경우에 그러하다. 아키비스트는 반드시 기록물을 생산한 개인이나 기록물 내용의 대상이 되는

* 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Right to Information. Tshwane Principle.

** ICA,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그 기록물의 사용이나 처리에 관해 영향력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선언한다. 보존기록의 무비판적 개방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개인을 상대로 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진실에 대한 권리와 식별가능한 개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12. 아키비스트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차별 없는 열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확립시킬 수 있는 보존기록을 찾아달라고 아키비스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다.

위에 제시된 제3원칙에 쓰여 있듯이, 세계인권선언 제2조에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또는 기타의 의견, 국민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같은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중 제15원칙의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의 원칙에 부합하는 면책 조항은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언급한다. “피해자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이 촉진되어야 한다....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은 희생자 및 다른 개인의 사생활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한을 전제로, 역사 연구의 이익을 위해 촉진되어야 한다. 접근을 관장하는 공식적 요건들은 검열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 <원칙>은 누가 보존기록을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기관 내부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다(예 : 보존기록을 이용하기 위한 특정 연령 요건 또는 자신에 대한 기록철은 볼 수 있지만 일반대중은 그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요건 등). 그러나 이 원칙은 기록보존기관들이 가능한 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을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그런 규정을 제정하도록 기록보존기관에 요구한다.

13. 아키비스트는 인권 침해 혐의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보존기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제15원칙에는 “피소자가 자신의 변호를 요청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접근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들은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때 기소자와 피소자를 구분지어서는 안 된다.

14.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 개인들은 일반 대중에게 보존기록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의 기본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아키비스트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할 보존기록을 찾아달라고 아키비스트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기록회의가 채택한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 원칙> 제3원칙은 “보존기록을 보유한 기관은 접근에 대한 능동적인 방식을 채택한다.”고 말한다. 보존기록 이용자들의 특별한 요구들이 수용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기반으로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부여받았다”라고 선언하며, 이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보는 장애인에게도 “서로 다른 종류의 장애에 적합한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적시에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은 원주민들이 보존기록을 포함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의 표현물을 유지, 보호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존기록을 찾고 복사하는 데 대한 도움이 요청될 수 있다.

III. 특별한 보호 장치

15.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합리적인 근거와 선의의 판단에 기초하여, a) 현재 진행 중이거나 (b) 피해자가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중대한 인권 침해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보존기록을 발견하면 그 보존기록의 존재를 관련 당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a. 정부는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보고할 수 있는 경로를 내부적으로 또는 감독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b. 비정부기관의 경우, 소속 피고용인이 인권 침해에 대해 보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러한 경로가 없다면,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도 [인권 침해를] 보고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악행을 보여주는 정보는 현재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당국에 공개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 원칙’ 제37원칙은 다음과 관련된 악행은 "공익 공개"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a. “형사 범죄”
- b. “인권 침해”
- c. “국제 인도주의 법률 위반”
- d. “부패”
- e.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
- f. “환경에 대한 위험”
- g. “공권력의 오용”
- h. “법의 부당한 집행”
- I. “자원의 부적절한 관리 또는 낭비”
- j. “위에 나열된 악행의 공개에 대한 보복”
- k.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일”

이 ‘국제 원칙’은 구체적으로 정부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는 비정부 기관과 개인의 보존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적절한 보고 경로에 대한 문제는 어렵다. 기관에 공식적인 보고 경로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키비스트나 기록관리자를 보복의 위험에 빠트리지 않는다면, 그런 경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독립적인 감독기관 또는 사법기관도 대안이 될 수 있는 보고 경로이다. 국가 안에 어떤 기관도 신뢰할 수 없다면, 아키비스트나 기록관리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16. 인권 침해나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을 보여주는 정보를 공개하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그 정보의 비밀기록 지정 여부 혹은 기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보복 조치와 보복 위험에 대해 관련 당국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즉, (a) 공개 당시 아키비스트가 그 공개된 정보가 악행을 보여준다고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었고, (b) 보복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 아키비스트가 기존의 내부 보고 체계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면, 그러한 보고 권리가 있다.

정부는 위의 <원칙> 제15원칙에서 정의된 것처럼, 악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유럽 의회협의회 결의안 1954 (2013)에서는 “[내부고발자] 선의의 신념에 따르고, 가용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공익을 위해 악행을 공개한 사람(내부고발자)은 어떠한 형태의 보복으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유럽협의회 각료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회원국에 대한 CM/Rec(2014) 7 권고안’에서 이와 유사한 요점을 제시했다.

“국가 안보와 정보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원칙” 제40원칙은 “[악행에 대한 주장이] 상충된다면, 그 보고자는 자신의 신념의 합리성을 변론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를 위한 공개가 타당하게 만들도록 이 공익 검증이 충족되었는지는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법원이나 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제15원칙과 마찬가지로, 보고자는 먼저 관련 국가기구에 보고해야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다면, 국제기구에 보고할 수 있다.

17. 기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국가와 공동체의 문화적, 법적 유산을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기록물을 수집해서는 안 된다. 기관의 수집정책은 공동체가 그들 자신의 역사를 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기록회의(ICA) 집행위원회는 1995년 봄 회의에서 “상충되는 기록소유권 청구의 해결에 관한 기록공동체의 견해”라는 성명을 채택했다.* 그것은 “출처의 원칙에 기반한 보존기록 원칙은 한편으로는 풍[기록군]을 분할할 가능성을 배척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보존기록의 수집을 배척한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원주민들에게 특별히 중요하다. 제14원칙에 명시된 것처럼, ‘원주민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은 원주민이 보존기록을 포함한 문화재를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 ICA, Executive Committee, Position Paper, “The view of the archival community on the settling of disputed claims.”

18. 기관과 아키비스트는 다른 나라의 기관 및 개인과 협력하여, 공정과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유출 보존기록'(displaced archives)에 대한 소유권 주장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해야 한다. 유출 보존기록의 반환이, 기록 파기의 위험이 있거나, 억압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보존기록 안에 자기 행동이 반영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을 연기해야 한다.

보존기록에 대한 국제적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공동 유산”이라는 개념을 권장하며, 국제기록회의는 위의 제17원칙에 인용된 성명서에서 이것을 지지했다. '무력 분쟁 사건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헤이그, 1954)의 첫번째 의정서는 당사국들이 “무력 분쟁 중 침범당한 영토에서 보존기록을 포함하여 문화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를” 요청한다. 이 협약은 무력 분쟁 중에 문화재가 유출된 경우, 분쟁이 끝난 후에 당사국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한다.

1995년 서명된 '약탈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된 문화 자원에 대한 UNIDROIT 협약'은** 특히 “소리, 사진, 시네마필름 보존기록을 포함한 보존기록”을 포함한 문화자원의 반환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UNIDROIT협약은 원상복구가 청구될 수 있는 대상 기간을 규정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적, 의식적 이용의 부분으로서, 계약국의 종족이나 원주민 공동체에 속하거나 그들이 사용했던 원주민 공동체의 신성하거나 중요한 문화유물에 대한 원상복구 청구” 근거를 제공한다.*** 위의 제17원칙에서 언급된 입장성명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존기록 반환이 사람의 생명 또는 기본 자유를 위협하게 하거나, 보존기록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을 경우, 보존기록 안에 언급된 그 개인의 인권 보호에 최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하며, 현 시점에서 보존기록 반환을 연기한다.

19. 기관은 전환기 정의 사법기관들과,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심대한 인권 침해를 겪은 희생자와 생존자를 포함한, 과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존기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출 보존기록을 포함하여,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제15원칙,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는 “피해자와 관련자가 그들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게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이 촉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무차별주의에 대항하는 행동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증보 원칙' 제16원칙, “보존기록 관리부서와 법원과 비사법적 조사위원회 간의 협력”에는 보존기록에 대한 접근에 관한 특별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법원과 비사법적 조사위원회 및 이 기구에 보고하는 조사관은 관련 보존기록에 반드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은 특히 피해자 및 기타 증인

*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The Hague, 1954)

** The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 원상복구(restitution)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나 원래의 장소에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한다. '유출 보존기록' 혹은 '원래 장소에서 이탈된 보존기록'(displaced archives)이란 약탈, 절도, 불법 매매, 유실로 인하여, 원래 있어야 할 장소나 소유자로부터 벗어나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을 말한다.

에게 증언의 전제조건으로 제공된 비밀 보장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접근에 대한 제한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없다. 즉, 정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접근 제한이 필요불가결함을 입증하거나, 접근 제한 결정이 독립적인 사법 심사 결과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IV. 교육과 훈련

20. 정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 기록보존기관 및 교육기관 그리고 보존기록 교육에 관련된 개인 전문가들은 아키비스트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고,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인정받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윤리적 의무를 인지하고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제기록회의 <윤리강령> 제9조에 따르면, “아키비스트는 기록보존 지식을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쇄신하고 연구 결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여 탁월한 전문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은 아키비스트가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활동을 감독하는데 능숙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권과 국제 인도주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21. 정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 기록보존기관 및 교육기관은 아키비스트 직업 선택 혹은 지속적인 업무 수행에서 개인 차별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 금지한 바에 근거하여, 이 <원칙>의 제3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제시된 차별의 정의에 따라 아키비스트를 고용할 때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22. 보존기록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집단, 공동체, 지역이 있는 나라, 특히 고유한 문화, 전통, 언어를 갖고 있거나, 과거 차별로 인한 희생자 집단이 있는 나라에서는, 정부,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 기록보존기관 및 교육기관, 개인 전문가들이 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기록전문직에 진입할 기회를 주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들이 그들 집단의 요구에 부응할 적합한 훈련을 받게 보장해야 한다.

많은 집단, 공동체, 지역에서 보존기록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 협약과 원주민 권리에 대한 유엔선언은 이러한 특정 집단에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V. 표현과 결사의 자유

23.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현,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특히, 이들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문제와 그에 따른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공적으로 토론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아키비스트는 자신들이 직

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획득한, 공개 권한을 가진 자가 아직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선언한다. 국제기록회의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제8조는 아키비스트는 “접근이 제한된 소장 기록을 처리하는 업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폭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비밀을 유지할 책임은 아키비스트가 기록보존기관을 퇴직한 후에도 지속된다. 제23원칙은 위의 제16원칙과 배치되지 않는다. 즉, 제16원칙은 악행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해당 기관에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4.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증진하고, 전문적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할 권한이 있다. 전문가협회의 집행부는 회원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외부의 간섭 없이 그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를 이 전문직과 실무 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사회 단체로 인정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결사에 소속할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라고 선언한다.

25. 아키비스트와 기록관리자 전문가협회는 인권과 관련된 보존기록을 취급하는 아키비스트에게 지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기록회의 기록전문가 <윤리강령> 제10조는 “아키비스트는 그 자신의 전문직 구성원 및 타 분야 전문직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세계의 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인권 양상을 가지고 있는 보존기록과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과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일은 협력적 작업이 꼭 필요한 분야이다.

부록 1. 정의

이 <원칙>에서는 다음의 정의를 적용했다.

보존기록 (Archives): 개인이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축적된 문서들로서, 그들의 지속적인 가치로 인해 보존된 기록. 이 <원칙>에서 어떤 기관의 주업무가 역사적 보존기록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것을 의미할 때에는 이 <원칙>은 “기록보존기관”(archival institution)이라고 칭했다. 이 용어는 기록(records)을 포함한다.

유출 보존기록 (Displaced archives): 합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에게 이관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보존기록. 이 유출 보존기록은 그 기록들이 원래 축적되어 있었어야 할 나라로부터 제거되어 옮겨진 보존기록과 노획된 보존기록을 포함한다.

기관 (Institution): 예를 들어, 상업적 기업, 종교에 기반을 둔 조직, 국민정부(national governments), 혹은 하위 국민정부(sub-national governments), 국제기구 및 정부간(inter-governmental) 기구, 조직된 정당을 포함한, 공공 또는 민간, 정부 또는 비정부 법인체. 이 용어는 ISAAR(CPF)(국제전자기록기술표준(법인, 개인, 가문))에 있는 “법인체”(corporate body)의 정의와 같다. 즉, “하나의 특정한 이름으로 식별되고 하나의 독립개체(entity)로 행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한 조직, 또는 개인들로 구성된 한 집단”이다. 이 <원칙>에서 “정부(government)”를 언급할 때에는, 다른 형태의 기관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특정한 형태의 기관을 뜻할 때에는 이 <원칙>에서 “기록보존기관”(archival institution) 또는 “교육기관”(educational institution)이라고 말했다.

기록 (Records): 한 조직이나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거래를 할 때 생산되었거나, 접수되었거나, 유지관리되고 있는, 모든 형태 또는 매체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ISAD(G)(국제보존기록기술표준)에서의 정의). 이 <원칙> 본문에서 “record”(기록)은 오직 인용문에서만 사용되었다; 즉 이 <원칙>에서 선호된 용어는 “archives”(보존기록)이며 이것은 기록(records)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환기 정의 기관 (Transitional justice institutions): 더 억압적인 체제로부터 더 민주적인 체제로 정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체. 전환기 정의 기관에는 특별법원, 진실위원회, 조사위원회, 배상심의회가 포함될 수 있다.

부록 2. 자료와 참고 문헌

주: 다음 문서는 온라인으로 이용가능하고 대부분 한 개 이상의 언어로 되어 있다. 단, ICA 1993-95년 CITRA 회의의 자료집은 예외이다(종이책으로 출간되었고, 영어와 불어로만 되어 있다.)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 (AHRD)* (2012)

COUNCIL OF EUROPE.

- _____.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lso known a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dopted in 1950).
- _____.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dopted in 1981)
- _____. *Recommendation No. R (2000) 13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a European policy on access to archives* (adopted in 2000)
- _____. *Recommendation Rec(2002)2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adopted in 2002)
- _____. *Convention on Access to Official Documents* (2009, not yet in force).
- _____. *Recommendation CM/Rec(2014)7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dopted in 2014)

COUNCIL OF EUROPE'S PARLIAMENTARY ASSEMBLY (PACE). *Resolution 1954 (2013): National secur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2013)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 _____. *The View of the Archival Community on Settling Disputed Archival Claims* (Position Paper adopt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Guangzhou, 10-13 April 1995).
- _____. *Reference dossier on Archival Claims*. Documents collated by Hervé BASTIEN (1995).
- _____. *Code of Ethics* (adopted in 1996)
- _____. *CITRA 1993-1995. Interdependence of Archives. Proceedings of the Twenty-Ninth, Thirtieth and Thirty-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ound Table on Archives: XXIX Mexico 1993, XXX Thessaloniki 1994, XXXI Washington 1995*. Dordrecht: 1998 (special issue of *Janus*).
- _____. *Universal Declaration on Archives* (adopted in 2010, endorsed by UNESCO in 2011)
- _____. *Principles of Access to Archives* (adopted in 20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1995)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Joint*

Declaration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and the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2004)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_____. 1548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2001)
- _____. 16175. *Principles and Functional Requirements for Records in Electronic Office Environments* (2011)
- _____. 30300. *Management systems for records* (2011)

ISLAMIC COUNCIL OF EUROPE. *Universal Islamic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in 1981).

LEAGUE OF ARAB STATES.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adopted in 2004)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G20, Whistleblower Protection Frameworks, Compendium of Best Practices and Guiding Principles for Legislation* (2011)

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 _____.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lso known as the *Banjul Charter*) (adopted in 1981)
- _____.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frica*, adopt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2002).
- _____. *Guidelines and Principle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2011)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 _____.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lso known as *Pact of San Jose, Costa Rica*) (adopted in 1969)
- _____.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lso known as *Protocol of San Salvador*) (adopted in 1988).
- _____. *Inter-American Convention on 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dopted in 1994)
- _____.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2000)
- _____. *Inter-American Democratic Charter* (adopted in 2001).
- _____.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Intolerance* (adopted in 2013)
- _____.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Busines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dopted at the second plenary session, held on June 4, 2014)

UNITED NATIONS.

Treaties

- _____.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and its annex: Regulations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The Hague, 18 October 1907
- _____. *Convention (IV)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12 August 1949.
- _____.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dopted in 1965)
- _____.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in 1966); *Optional Protocol* (adopted in 1966); *Second Optional Protocol* (adopted in 1989)
- _____.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opted in 1966)
- _____.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dopted in 1979)
- _____.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in 1984)
- _____.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in 1989)
- _____.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dopted in 1990)
- _____.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opted in 2006)
- _____.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adopted in 200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 _____.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1948)
- _____.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dopted 1998)
- _____.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opted 2005)
- _____.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dopted 2007)

United Nations Congress o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Treatment of Offenders.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adopted in 1990)

UNITED NATIONS HUMAN RIGHTS BODIES

- _____.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Human Rights of Detainees Question of the impunity of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ivil and political)*. Revised final report prepared by Mr. Joinet pursuant to sub-commission decision 1996/119 (1997)
- _____. Commission on Human Rights. *Updated 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 E/CN.4/2005/102/Add.1. (2005)
- _____.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ule of Law Tools for Post-Conflict States: Reparations Programmes* (2008)
- _____.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1)
- _____.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endors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 _____.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seminar on experiences of archives as a means to guarantee the right to the truth* (2011)
- _____.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2011)
- _____.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1/7 Right to the Truth* (2012)
- _____.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2013)
- _____.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4)
- _____.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ule of Law Tools for Post-Conflict States: Archives* (2015)
- _____.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Pablo de Greiff* (2015)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Conventions

- _____.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The Hague, 14 May 1954) - *First Protocol*, The Hague, 14 May 1954; - *Second Protocol*, The Hague, 26 March 1999
- _____.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Paris, 14 December 1960
- _____.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0)
- _____.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 _____.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 _____.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2005)

Other UNESCO resources

- KECSKEMÉTI Charles. *Archival claims. Preliminary study on the principles and criteria to be applied in negotiations. / Les contentieux archivistiques: Étude préliminaire sur les principes et sur les critères à retenir lors des négociations*. Paris: UNESCO, 1977

GONZALEZ QUINTANA, Antonio, et al. *Archives of the security services of former repressive regimes: report prepared for UNESCO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ves*. Paris: UNESCO, 1995; revised by GONZALEZ QUINTANA as *Archival Policies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is: ICA, 2009

UNESCO.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 (2003)

_____.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2003)

CIVIL SOCIETY STATEMENTS.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1995)

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Tshwane Principles) (2013)